## 되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33

발의연월일: 2021. 4. 16.

발 의 자 : 홍석준 · 하영제 · 박대수

김예지 · 김승수 · 김태호

곽상도 • 강대식 • 김용판

최춘식 · 양금희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

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최근에 뇌 연구는 인공지능기술의 기반이 되면서도 다양한 학문과 융합이 가능하여 미 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 고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뇌 산업화 기반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는 제도적 으로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국제 선진 기술 도입,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,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술정보의 수집·보급 등 뇌 산업기술의발전 기반 조성에 관한 체계적인 추진시책을 마련하여 뇌 산업 진흥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국제협력 증진 및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, 동향파 악을 추가함(안 제10조).
- 나. 관계 기관 등이 추진하는 산업화 촉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함 (안 제12조).
- 다. 뇌연구와 관련된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추진시책을 마련함(안 제13조).
- 라. 뇌 분야의 연구소 설립·지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(안 제17조).
- 마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(안 제19조 신설).
- 바. 위임·위탁업무를 하는 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 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(안 제20 조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"전문인력 파견"을 "국제 공동연구, 동향파악, 전문인력 파견"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중 "산업체"를 "기관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정부는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산업화를 촉진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정부는"을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 및 관련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뇌연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·추진하는 경우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 구개발사업 관련 지식·정보의 생산·유통·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

기 위한 시책과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설립할 수 있다"를 "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구소의 설립·지정·운영·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17563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에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뇌산업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 관·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제20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·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
제10조(연구 및 기술 협력) 정부	제10조(연구 및 기술 협력)				
는 뇌연구와 그 기술 개발에					
관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					
노력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기					
위한 <u>전문인력 파견</u> , 해외 전	국제 공동 연구, 동향파악,				
문인력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	전문인력 파견				
하여야 한다.					
제12조(관계 <u>산업체</u> 지원) 정부	제12조(관계 <u>기관 등</u> 지원) <u>①</u>				
는 뇌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					
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					
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.					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정부는 뇌연구 및 뇌산업				
	관련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				
	산업화를 촉진하고 연구 역량				
	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				
	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				
	<u>다.</u>				
제13조(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)	제13조(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)				
<u>정부는</u> 뇌연구에 관한 정보를	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				
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					
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				
<u>&lt;신 설&gt;</u>	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				
	뇌연구 및 관련 기술의 산업화				
	를 촉진하기 위하여 뇌연구 종				

<신 설>

제17조(연구소의 설립) ① 뇌 분 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,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 제를 유지 ·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(出捐)하는 연구소 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구소는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을 적 용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 다.

일부개정법률

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
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・추
진하는 경우 「과학기술기본
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
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
런 지식·정보의 생산·유통·
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
시책과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
야 한다.

173	조(연구	7소의	의 4	설립	) (	1		
	<u>설립</u>	하거	나_	지건	성 할	-	<u>수</u>	있
<u>다</u> .								
2	제1힝	-에	따른	- 0	크구	소.	의	설

법률 제17563호 뇌연구 촉진법 법률 제17563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

정한다.

립ㆍ지정ㆍ운영ㆍ지원 등에 관

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

<신 설>

<u><신 설></u>

- 제1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기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 부를 뇌산업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20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·단체의임원 및 직원은 「형법」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